

제 192회 영등포구의회
2015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5. 12. 9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

1. 경 과

의안 제108로 2015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영등포구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직제 개편과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직위 및 회계공무원 명칭 변경 등을 정비
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직제개편으로 직위 변경 : 도로관리 담당주사→ 도로굴착팀장
(안 제5조제2항, 안 제6조제4항)

나. 회계관직 명칭 변경 : 경리관 → 재무관(안 제5조제3항)

다.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 반영(안 제6조의3제7항)

-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규정 신설

라. 「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폐지에

따라 시행규칙 주요 내용 반영

(안 제6조제3항제3호, 제6조제6항, 제6조의3제2항~제5항,

제6조의3제8항, 별지 제1호~제2호 서식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 「지방재정법」 제9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(2015. 9. 3 ~ 9. 23)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직제 개편과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사항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「지방재정법」 제91조에 따라 회계공무원 관직명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 직제개편 사항에 따라 “도로 관리담당주사”를 “도로굴착팀장”으로 직위명을 변경함.

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고, 회의록에는 회의 실시와 장소, 출석 위원명,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함.

또한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는 「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 규칙」을 폐지하면서 시행규칙 내용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운영사항 등 필요한 조항은 조례안으로 신설함.
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영등포구 부패 방지를 위한 영등포구 부패영향 평가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보완하여 투명한 위원회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 련 법 령

■ 『지방재정법』

제91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) 징수관·재무관·재산관리관·물품관리관·채권관리관·부채관리관·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·분임자(分任者) 등(이하 "회계관계공무원"이라 한다)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■ 『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』

제3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 ①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<개정 2006.11.27, 2012.11.15>

1. 본청<개정 2005.08.10, 2006.07.06, 2006.11.27, 2009.03.05, 2010.10.07>

징수관 -재정국장

일반회계분임징수관 - 세무과장,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

특별회계분임징수관 -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국장

경리관 - 재정국장

분임경리관 - 재무과장, 각 과장(여비, 업무추진비,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)

총괄채권관리관 - 재정국장

채권관리관 - 각 과장

총괄채무관리관 - 재정국장

채무관리관 - 각 과장

총괄기금관리관 - 예산담당국장

기금운용관 - 기금담당과장

기금출납원 - 기금담당팀장

지출원 - 재무과 지출담당팀장

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-세무과 세입총괄담당주사, 구세징수업무담당주사 및 세

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 담당팀장

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-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과장

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- 출납담당자

일상경비출납원 - 각 과 주무담당팀장

■ 『지방자치법』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[조례로 정한다](#)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■ 『도로법』

제91조(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)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[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](#).

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[제37조](#)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·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.

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[대통령령으로 정하는](#)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